



복합지구항의 처리 절차

A. 처리 절차의 대상이 되는 항의.

회원, 클럽경계선, 복합지구헌장 및 부칙 혹은 총재협의회가 수시로 채택하는 방침 혹은 절차의 해석, 위반, 적용에 관하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는 만족스러운 해결을 볼 수 없는 기타의 모든 라이온스 복합지구 내의 문제에 관해 복합지구 내의 클럽간, 혹은 복합지구내의 클럽과 지구행정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하기의 항의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장, 중재자 혹은 국제이사회(혹은 동 이사회가 임명하는 자)가 본 항에 규정하는 과정상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본 항의 처리 절차의 제약을 받는 관계자 전원은 항의 처리과정 동안 행정상 혹은 법률상의 처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B. 항의 처리 요청 및 수수료

국제협회 내 곧 스탠딩 라이온스클럽(“항의자”)만이 서면으로 협의회의장에게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처리하도록 요청(“항의를 제기하는 자”)할 수 있다. 항의 제기 신청서는 분쟁에 관련된 사건이 발생한 날 또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이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항의자는 항의를 제기하는 클럽의 전회원들 혹은 지구 캐비닛의 과반수로 결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클럽총무 혹은 사무총장의 서명이 있는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

본 항의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하려면 각 항의자가 복합지구에 지불하는 US\$750.00의 수수료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국통화를 항의 제출 시에 협의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재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되거나 항의를 취소하는 경우 US\$100.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유보하고 US\$325.00를 항의자에게 반환하며 US\$325.00는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지명된 중재자가 항의자 측의 항의에 근거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US\$100.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US\$650.00를 항의자에게 반환한다. 항의가 무근임이 판명될 경우, US\$100.00를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고 US\$650.00를 응답자에게 지불한다. (응답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수대로 균등하게 분배한다.) 본 항의절차에 의한 기간 내에 화해, 기각, 항의를 지지 혹은 거부할 경우(정당한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적으로 수수료 전액을 사무 수수료로 복합지구에 보유하며 관계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본 항의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복합지구의 현방침에 본 항의 처리절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항의 관계자간에 균등하게 지불할 것이라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복합지구가 책임진다.

C. 중재자 선임

항의처리 요청서를 제출한 지 15 일 이내 각 당사자가 각기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 선출할 것이며 이는 前총재(협의회의장직을 맡은 바 있는)로서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의 분쟁에 관련된 클럽 이외의 곧 스탠딩 클럽에 소속된 곧 스탠딩 현회원으로 분쟁문제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충성심을 갖지 않은 자라야 한다. 선출된 지명자 전원이 의장으로 활동한 중립적인 중재자를 1명을 선출하며 이는 전국제이사로서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의 분쟁에 관계된 클럽 이외의 곧 스탠딩클럽 소속 곧 스탠딩 현회원으로 분쟁에 관해 공평하며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에게 충성심을 갖지 않은 자라야 한다. 만약에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로부터 중립적인 국제이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외에 있는 군 스탠딩클럽의 군 스탠딩 현회원을 선출한다. 중재자 겸 의장 선출에 따른 선출된 중재자 전원의 결정이 최종 구속력을 가진다. 해당 선출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중재자는 본 항의 처리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다.

선출된 조정자가 중립적인 항의자 겸 의장이 선출된 지 15 일 이내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행정상의 이유로 해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새로운 복수의 중재자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 의 팀”) 을 선출하여 새롭게 선출된 중재자 전원이 전술한 선출 절차에 필요한 조적에 따라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 1 명을 선출한다. 선출된 중재자로 구성된 제 2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의 선출에 동의하는 경우 선출된 중재자가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외의 군 스탠딩 클럽의 군 스탠딩 회원 1 명을 중립적인 중재자 겸 의장으로 선출한다. 만약에 선출된 중재자들로 구성된 제 2 의 팀이 분쟁이 발생한 복합지구 내외로부터 중재자 겸 의장을 선출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기 규정된 지명절차와 규정에 따라 위원장으로 활동할 1 명의 지명할 새 중재자를 선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임명된 중재자 팀이 문제가 발생한 복합지구 출신인 위원장 임명에 관해 합의를 볼 수 없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복합지구 혹은 인접한 복합지구 중 가까운 복합지구 출신으로 가장 최근에 국제이사회에 재임한 前국제이사를 조정자 겸 의장으로 임명할 것이다.

D. 조정회의 및 중재자의 결정

중재자가 선출된 후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관계자간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해당 회의는 중재자가 선출된 지 30 일 이내 개최한다. 중재자의 목적은 신속하고도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자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중재자는 논쟁에 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재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지 30 일 이내 서면으로 결정을 제시하도록 하며 관계자 전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자의 결정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본을 관계자 전원, 협의회의장 및 요청에 따라 국제협회 법률부에 제공하도록 한다. 중재자의 결정은 국제, 복합지구 및 지구헌장 및 부칙과 이사회방침에 적용되는 조항과 일치해야 하며 국제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국제이사회 혹은 그 피임명자가 독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